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1. 개정이유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지역별 기준 설정(안 제3조 신설)

지자체별로 다중생활시설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호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 개정령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u>
<u>제3조</u> (생 략)	<u>제4조</u> (현행 제3조와 같음)